

[6-1]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사례 (FAQ)

【이중근로자 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1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3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 퇴직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2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⑦4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됨

【인적공제】

4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사업(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5

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으로 확대 되었다던데 맞나요?

- 예, 맞습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70%를 근로소득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6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령 §106②)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7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8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150만 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 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9

연금계좌 가입자는 몇%를 세액공제하나요?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4,000만원 이하)이면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그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합니다.

10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이 7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는데요?

- 종전에는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 납입액 중 연 4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연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 대상	세액공제액
0원	900만원	700만원	700만원 × 15% 또는 12%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700만원 × 15% 또는 12%
500만원	200만원	600만원	600만원 × 15% 또는 12%
900만원	0원	400만원	400만원 × 15% 또는 1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부터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그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10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29세 이하' : 연령이 만 30세가 되기 전날까지를 말하며,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제외하고 연령을 계산

12 청년이 생애 최초로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하나요?

- 신규 취업이든지 재취업이든지 상관없이 취업 시 연령 요건(29세 이하 청년)을 만족하는 경우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주민등록표 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는 자가 '15.12.31까지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감면신청 기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나요?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이후 제출하는 경우, 과년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 본인이 관할세무서(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장, 근로자 : 주소지)에서 경정청구(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 등을 첨부)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가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2013년 이전 3억 원) 이하인 주택(2013년 이전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기금으로부터
 -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상환방식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14년
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300만원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기 타	500만원	-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16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 및 채무자별 소득공제 여부>

주택 소유자	채 무 자		
	근로자	배우자,부양가족	공동채무
근로자	가능	불가능	가능
근로자 공동소유	가능		(근로자 채무부담 부분만)
배우자,부양가족	불가능		불가능

【자녀세액공제】

17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또 출산을 한 경우 무슨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 자녀세액공제액은 30만원(15만원×2),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씩),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 총 7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8

손자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인 아들과 딸, 입양자, 위탁아동을 말합니다.
-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인적공제, 추가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19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공제 대상 장애인·65세 이상 노인은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나 난임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 연말정산분 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20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공제제외 대상 항목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유치원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초등학교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중·고교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대학교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
대학원	어학연수비용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관련 모든 비용

21

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의 수강료와 간식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하나요?

-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식대, 간식비 포함)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22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13.8.13. 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 × 10%

23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

2014년부터 세대원인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세대원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다른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2014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2014년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는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6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으나,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7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 받을 요건은 2014년부터 삭제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2] 편리한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사례 (FAQ)

1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세액·소득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4종* 포함)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 총 5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제외.
**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편제출이 가능함.
-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공제 누락 등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후에 근로자가 수정할 사항만 정정하면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홈택스)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3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가 공제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연말정산간소화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 으로부터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일괄로 전산수집하여 확인·검증 없이 홈택스에서 근로자에게 조속히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만약, 공제요건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 사후에 세금 (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난해에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에 보이지 않는데?

- **성년(만19세 이상, 1996. 12. 31.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제공동의절차 안내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신청)

5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 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팩스(☎ 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 인터넷 발급 가능

6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아야 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 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 상환액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8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 홈택스 > 로그인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9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1월 23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여 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따로 직접 수집해야 함.

10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모든 교복구입비를 제공하고 있나요?

- 아닙니다. 교복전문점에서 1월~10월 중에 구입한 내용만 파악되어 제공하고 있으므로, 교복전문점이 아닌 곳과 교복전문점에서 구입한 경우라도 11월~12월에 구입한 경우에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1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

12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전산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수기로 작성하였으나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홈택스에서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를 작성 하려면 간소화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고,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자동 작성 됩니다.

13

회사에서 등록한 기초자료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항목 오른쪽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연금보험료합계금액**은 국민연금으로 조회됩니다. 국민연금이 아닐 경우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화면의 ‘연금보험료공제’ 항목 오른쪽에 있는 <田수정>을 클릭하여 정정하시면 됩니다.
- **기부금합계금액**은 회사에서 일괄로 기부한 금액이며,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으로 조회됩니다.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이 아닐 경우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화면의 ‘기부금’ 항목 오른쪽에 있는 <田수정>을 클릭하여 정정하시면 됩니다.
- ※ 기납부(소득세)세액은 예상세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항목으로 공제신고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14

회사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록한 경우 총급여를 입력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 회사가 근로자 기초정보를 등록하면서 총급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총급여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공제신고서는 총급여, 4대보험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총급여가 없는 경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15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매월 내는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추가 납부할 세액에 대한 분납 신청도 가능 하나요?

- 예,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게 되는 세액을 근로자가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 ~ 4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추가를 어떻게 하나요?

- [Step.02 부양가족 입력]에서 <부양가족 추가>를 클릭 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반영됩니다.

17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 의료비 항목의 <田수정>버튼을 클릭하여 하단부에 있는 <자료추가>에서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지출액 등을 입력한 후 <반영하기>를 클릭하면 되며, 관련 증명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19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종전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받을 내역을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수동으로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서류(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전산작성 공제신고서)를 회사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0 (근로자) 근로자가 회사로 무엇을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나요?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 자료(Pdf)를 회사로 간편제출할 수 있고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한 후 기본사항과 부양가족을 확인(수정)하고, 직접 수집한 자료를 추가 입력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자동 작성되는 부속명세서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Pdf 자료 포함)를 회사로 간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21 (회사)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근로자가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제출(On-line)하면 출력하거나 수동 전달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회사나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 제출한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 등을 일괄로 다운받아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고
 - 지급명세서 작성용 근로자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직접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근로자 1천명 이하만 가능)할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22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이번에 시행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종전처럼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제출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연말정산이 자동화 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과거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로 내려 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수 있음.

23

(회사) 회사가 공제신고서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하기」에서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24

(회사) 회사가 등록하는 근로자 기초자료는 무엇인가요?

-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항목*을 등록해야 합니다. 선택항목**까지 등록하면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 작성용 항목***까지 등록하면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근로자의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 : 근무기간, 급여상세 항목, 비과세 항목,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등

※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세액계산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자체프로그램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회사는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이 필요 없음.

25

(회사)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어떻게 등록 하나요?

- 「간편제출하기」에서 엑셀 양식을 내려 받아 등록할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엑셀로 작성하여 업로드(Upload)*하거나

- 지난 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전산 과부하를 고려하여 근로자 2천 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하여 등록하여야 함. (하나의 파일에 별도의 시트로 작성 불가)

※ 간편제출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접속(인증서) → 아이콘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On-line)

26

(회사)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언제 등록하여야 하나요?

-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16.1.6.부터 3.10.까지 등록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가 사실상 연말정산을 마치는 1월말 이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말정산 기초자료 엑셀(Excell) 일괄 업로드(Up-Load) 기능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인하여 1.15.(목)~1.24.(일)까지는 18시~24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일인 1.25.(월)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27

(근로자) 근로자가 어디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나요?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내역을 선택한 후 상단에 있는 「편리한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 메뉴에서 온라인 제출할 수 있고
 -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포함)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간편제출하기」에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간편제출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아이콘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On-line)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시작하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On-line)

28

(근로자)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경우 그 증명자료도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나요?

- 간편제출(On-line)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직접 수집한 자료를 On-line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 확인이 어려워 제출할 수 없음.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추가로 입력하고 증명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

29

(근로자)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On-line)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근로자가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15년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음.

30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수정하여 다시 간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최종분만 수록) 회사가 확인완료한 후에는 수정 제출할 수 없습니다.

31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어떤 방법으로 내려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별로 간편제출(On-line) 받은 공제신고서를 개인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2월 1일부터는 일괄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려받기는 간편제출 받은 다음 날부터 가능(일괄 다운로드는 장시간 소요 예상)

32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를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내기’를 클릭하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근로자 1천 명 이하 가능)를 작성할 수 있으며

- 일괄 다운로드 받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업로드(Upload)하여 지급명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해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간소화서비스 자료(PDF)와 공제신고서(PDF)를 회사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 국세청 누리집 > 연말정산 >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에 게재함

33

(세무대리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은 어떻게 간편제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세무대리인이 먼저 「국세청 홈택스」 → 「세무대리」 → 「수임납세자 등록」코너에서 수임업체를 등록하고
-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세무대리인 위임 동의」에서 위임 동의하면
 -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관리 및 지급명세서 자동 작성 등 「간편제출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4

(세무대리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종전에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출력물로 제출받아 수동 입력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으나,
 -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공제신고서 등 포함)를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일괄 업로드하여 지급명세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어 연말정산이 편리해집니다.

※ 간편제출 받은 자료를 내려 받아 과다공제 여부 검토 가능

※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 근로자의 간편제출 여부 확인 또는 제출독려가 곤란할 경우에는 회사가 세무대리인에 대한 위임동의를 해지한 후 그 임무를 수행하고 완료 후 다시 위임동의를 하면 세무대리인이 지급명세서 작성 등 후속업무를 할 수 있음

35

(근로자)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예상세액 계산 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를 회사가 등록하지 않더라도
- 근로자가 이 항목을 회사에 확인하여 입력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공제신고서를 전산 작성하여 출력할 수 있고, 예상세액 계산은 물론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음.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3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를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최근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37

[예상세액 계산하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나 추가납부할 세액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한 항목별 금액과 부양가족 내용 등이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한 것과 같다면 결과가 동일하지만 만약 다른 사항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38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를 클릭하면 회사일괄기부금 중복우려가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등록한 회사일괄기부금이 공제신고서 작성시 이미 반영 되었으므로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클릭 후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메시지에서 <취소>를 하여야 중복되지 않습니다.
- 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한 후 바로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해 왔다면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를 1회만 클릭해야 중복되지 않습니다.

39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반영할 수 있나요?

- 공제신고서 작성시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수집하여 입력하였다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지만
-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여 왔다면 해당 항목의 <田수정>버튼을 클릭한 후 공제 받을 금액을 감안하여 수정 입력한 후 <적용하기>하면 반영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40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왜 필요한가요?

-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왜냐하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 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41

맞벌이 근로자가 절세 안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시 총급여 및 4대보험 등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42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당초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에 대한 각각의 결정세액을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한 결정세액을 계산해 사례별로 기준금액과의 결정세액 차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 부부가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을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당초 결정세액이 각각 100만 원과 70만 원이라고 하고, 부양가족을 바꾸어 모의 계산한 결정세액이 각각 60만 원과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서비스에서는 당초 결정세액과의 차액(각각 -40만 원과 +30만 원, 합계 -10만 원)만 알려 드립니다.(부양가족을 바꾸면 당초보다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10만 원이 절감됨을 안내)

< 편리한 연말정산 - 경정청구하기 >

43

지난 연말정산 시 공제 받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 경정청구하기」에 로그인하여 경정청구 할 연도를 선택하면 신고한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누락한 공제항목을 수정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경정청구서가 자동작성 됩니다.
- 근로자가 경정청구서를 On-line으로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내용이 정당하면 환급하게 됩니다.

- 대부분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중순에 제공하지만 「경정청구하기」 서비스는 2월경에 제공할 예정이며, 서비스는 2회로 나누어 1차는 2016년 2월('11년~'14년 귀속), 2차는 2016년 7월**('15년 귀속)에 제공 예정입니다.

* (경정청구) 연말정산시 실수나 고의로 공제항목을 신고 누락한 경우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2015년부터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현재는 2011년 귀속 연말정산(2012.3.10. 신고)분부터 5년간 경정청구 가능함.

** 연말정산 신고기한(3월 10일) 이후 진행되는 지급명세서 오류정정 및 추가수집,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감안함.

< 기 타 >

- 국세청(세무서)은 연말정산 홍보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결과 매월 낸 세금이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사기 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서,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